

지역·소지역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간 협력 강화

다카하시 아카츠키
유네스코아프리카사무소 문화담당관

개요

본 발표는 지역·소지역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들을 공동체(local)·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소지역 차원에서 규명한다. 아태지역 내 소지역 통합기구들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잠정 협력기관으로 소개하고, 아태지역 3개국에 설립된 무형문화유산 카테고리 2기구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발표는 지역·소지역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실행계획을 제안한다. 첫째,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성취 가능한 목표와 결과를 분명히 제시한다. 둘째, 전략과 실행계획을 세운다. 셋째,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본 발표에 제시된 사례들은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태평양지역에서 수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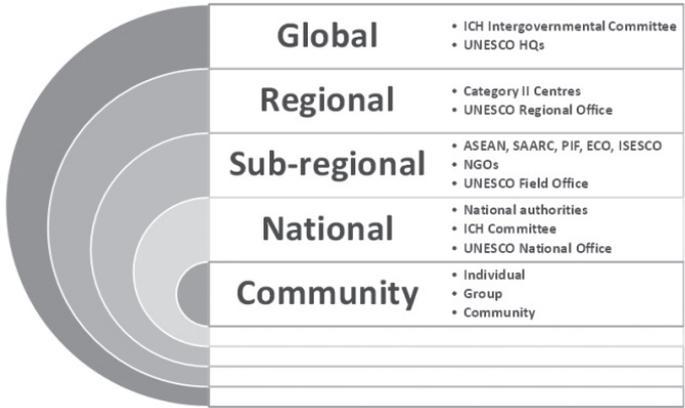
1. 서론

지리적으로 광활한 아태지역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및 태평양이라는 여섯 개의 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태지역은 선진국, 신흥경제국, 개발도상국 등 경제개발 수준이 제각기 다른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국가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를 사용하는 부탄과 같이 개발의 사회적,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국가들도 있다.

이렇듯 국가별 특성이 뚜렷한 아태지역이지만, 최근 지역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발표의 제목은 ‘지역·소지역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간 협력 강화’이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공동체·국가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Global(세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유네스코 본부

Regional(지역): 카테고리 2기구/ 유네스코 지역(regional)사무소

Sub-regional(소지역): ASEAN, SAARC, PIF, ECO, ISESCO/ 비정부기구/ 유네스코 지역(field)사무소

National(국가): 정부당국/ 무형문화유산 위원회/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Community(공동체): 개인/집단/공동체

II. 공동체·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담당하는 공동체는 공동체·국가 차원의 주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란 보통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토착 집단을 뜻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범위는 국가 전체 또는 이주민 공동체처럼 국경을 넘어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다. 어떠한 관습을 문화유산의 일부로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것은 물론,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정의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공동체를 제외한 국가 차원의 이해당사자들을 나열한 것이다.

1) 비정부기구, 도서관, 기록보관소, 문화센터, 대학교, 연구소 등

무형문화유산 관리자와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의 보존회를 설립한다. 문화센터, 박물관 및 대학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식센터이자 전문인력의 집합소이다. 일례로 국립사모아대학교 부설 사모아학연구센터는 현장연구에 활발히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사모아 문화 관련 학술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이 학술회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공개된다. 공동체 및 국가 연구원들은 현지지식 및 언어능력 덕분에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 시, 도, 주, 연방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당국

협약 당사국의 대표로서 자국 영토 내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관장하며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비롯한 보호정책 및 조치를 마련한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통합과 마을 및 공동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통합이 결합된 독특한 통치시스템을 운영하는 태평양지역 국가에서는 전통적 지도자들이 주요 이해당사자로 간주된다. 공동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을 위해서는 이들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협약 13조에 따라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책임기관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체 대표, 전문가, 민간협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4)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의 유네스코 국가사무소는 필요할 경우 회원국에 정책 조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5) 유엔 관련 기관(UNCT)은 유엔 산하 특별기관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주대표를 두고 있다(농업분야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보건분야의 세계보건기구(WHO), 아동분야의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개발분야의 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 관련 기관은 보다 조직적으로 국제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하나의 UN(One UN)’ 또는 ‘하나된 원조(Delivery as One)’라는 구호로 표현되고 있다.

2주 전 필자는 ‘2012~2015년 유엔 개발원조 기본계획’ 관련 유엔 관련 기관 회의 참석 차 앞서 언급한 유엔 원조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포트모르즈비에 다녀왔다. 이 회의에서는 거버넌스, 보건, 교육, 환경(재난관리 포함) 네 가지 주제 분야가 다루어졌다. 무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와 언어 다양성의 보고인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회의였지만, 문화 관련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경제 및 인프라 개발에 비해 문화가 여전히 등한시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3.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5. 산모건강의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지향하는 여러 유엔기구 및 개발협력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문화 중심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문화의 기여를 옹호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유네스코는 문화,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결속, 평화의 문화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모두를 위한 교육(EFA)’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담긴 문화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절대빈곤의 퇴치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현지 생산시스템(목표 1, 7), 가정교육 및 비정규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전승(목표 2), 여성 공예가들이 독학을 통해 습득한 전통지식과 기술의 인정(목표 3), 아동과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 조산원의 훈련과 자격인증(목표 4, 5)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상기 이해당사자 이외에도 국가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Ⅲ. 지역·소지역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간 협력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담당하는 소지역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1) ASEAN, ASEAN + 3, SAARC, ECO, ISESCO, PIF 등 소지역 통합기구
 이들 기구는 아태지역에 위치한 특정 국가들로 구성된 지정학적, 경제적 조직이다. 이들의 일차적 목표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지만,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문화가 갖는 중요성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문화적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각 회원국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 예로, 태평양제도포럼(PIF)은 지역 협력을 통한 태평양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변형 추구라는 목표 하에 1971년에 수립된 정부 간 기구이다. 2005년 회원국들은 “우리는 태평양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 전통, 종교의 가치가 존중되고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태평양 계획(Pacific Plan) 결의문을 채택했다. 태평양제도포럼은 태평양의 소규모 도서국가들 사이에서 정치적 위상이 높다. 유네스코아프리카사무소는 문화 발전의 기치를 드높이기 위해 태평양제도포럼과 협력하고 있다.
- 2) 아태지역 내 여러 비정부기구들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자문기구로 공인 받으면서 동 협약은 유네스코의 여러 문화 관련 협약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법적 장치가 되었다. 일례로, 태평양제도박물관협회(PIMA)는 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서 온 기관이다.

- 3) 알마티, 아피아, 베이징, 자카르타, 뉴델리에 위치한 유네스코 지역사무소는 필요할 경우 회원국에게 정책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차원의 이해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 1) 교육에 중점을 둔 중국의 아태무형문화유산국제훈련센터(CRIHAP),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아태무형문화유산국제연구센터(IRCI), 정보와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한국의 아태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ICHCAP, 아태무형유산센터) 등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

이들 기관의 역할은 집행이사회 관련 문서에 정의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81 EX/17).

중국의 아태무형문화유산국제훈련센터(CRIHAP): (가) 교실 및 현장교육을 포함한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비를 제공한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운영지침 및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조치 등 다양한 정책과 조치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기록 작업에 관한 유네스코 발행 출판물과 현장 연구에서의 활용에 대해 소개하고, 이론과 실습 등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지도한다. (나) 국내외 전문가 및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영역을 전문으로 하는 비정부과학단체 구성원을 앞서 언급한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나 자문위원으로 초빙한다. (다) 무형문화유산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기관들 특히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와의 국제 및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아태무형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ICHCAP):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자료의 효과적인 관리, 무형문화유산 현황조사 및 기록작업 지원, 기록자료의 보존과 디지털화,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을 위한 정보체계를 수립한다. (나) 무형문화유산의 보급을 위해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고, 관련 정보 및 홍보자료를 작성·배포하며, 무형문화유산 연행자와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장을 추진한다. (다)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축제와 회의를 개최한다. (라) 국제 및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

련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도록 한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들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관과 개별 전문가 사이의 교류를 촉진한다.

일본의 아태무형문화유산국제연구센터(IRCI): (가) 위험에 처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례와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 또는 조율하면서 국내외 대학교, 연구소, 공동체 대표 및 기타 정부·비정부 기관들과 협력한다. (나) 아태지역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1, 12, 13, 14조에 명시된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연구지원을 실시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례 및 방법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둔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아태지역 내 전문가, 공동체 대표 및 행정가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라) 아태지역 신진 연구원들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연관된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한다. (마) 카테고리 2기구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지역내외 기관들과 협력한다. (바) 그 밖에 모든 관계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고 동시에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아태지역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카테고리 2기구가 역할별로 구분되어 3국에 설립되어 있다. 이들 기관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각각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채택된 아태무형유산센터 프로그램과 실행계획에는 이들 세 기관 간의 조정회의가 포함되어 있다. 3국의 카테고리 2급 기관은 협력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하나 된 원조(Delivery as One)’를 실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그 역량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네스코방콕사무소는 아태지역에서 유네스코 문화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방콕사무소는 현재 ‘하나 된 원조’방식을 통해 방콕 내 유엔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IV. 지역·소지역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간 협력 강화 방안

본 발표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지역·소지역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선결되어야 한다.

1) 국제적 기준에서 성취 가능한 목표와 결과를 분명히 제시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최고기관인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형성된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아태지역이 성취할 수 있는 목표와 결과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아태지역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할 유산의 수를 늘리는 것은 결단코 아닐 것이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유산과 보호에 취약한 공동체의 유산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 정책 및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목표와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수많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긴밀한 협력 및 공조 관계를 수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태평양지역의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사례로 들자면,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래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한 태평양 국가들은 중기 실행계획의 수립을 관행화했다. 2009년 완료된 제1차 실행계획(Pacific 2009 Programme)에 이어 2010~2015년 까지 진행되는 제2차 실행계획이 마련되었다.

제2차 실행계획은 지역활동을 강조하는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역활동으로는 문화경관, 태평양지역 초창기 인류 정착, 태평양 항해와 관계된 태평양 유적지, 초국적 유적관리, 정보 및 교육자료, 확인된 위협요소(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구 및 대처, 정기보고(2011년) 후속조치 등의 주제와 관련된 지역 워크숍 개최를 들 수 있다.

동 실행계획은 태평양세계유산워크숍에서 논의, 검토 및 갱신되었다. 태평양세계유산워크숍은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노르웨이 등 개발협력국의 추가예산 지원으로 지금까지 케언즈, 통가리오, 마우피티, 아피아에서 4회가 개최되었다. 태평양 국가 또는 영토에서 열리는 이 워크숍에는 각국에 배치된 두 명씩의 세계유산(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연락담당관들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및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대표, 지역 비정부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태평양(ICOMOS Pacifika), 태평양제도박물관협회(PIMA)와 남태평양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2007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응가티 두와레토아 마오리족 추장 테 헤우헤우 의장의 주관으로 세계유산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되었다. 2011년 7월 현재, 40년간의 협력관계를 지속한 아피아사무소 소속 16개국 중 14개국이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가 내 유적지로 파푸아뉴기니의 쿠크 초기 농경지, 솔로몬 제도의 렌넬 섬 동부, 바누아투의 로이 마타 추장 영지, 마셜 제도의 비키니 환초 핵 실험지의 총 다섯 곳과 태평양 영토 내 유적지로 뉴칼레도니아의 석호와 주변 생태계, 칠레의 라파 누이 국립공원, 핏케언 군도 내 헨더슨 섬, 하와이의 화산공원과 파파하나우모쿠아케아 해양 국립 기념물의 총 다섯 곳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3) 모니터링과 평가

아태지역은 현재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과 실행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